

#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 지원사업 협약서

서울특별시, (사)한국주유소협회,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,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, 제이씨데코 코리아(주)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주유소 화장실 이용불편 개선 및 화장실 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【목적】**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, (사)한국주유소협회,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,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, 제이씨데코 코리아(주)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관리대상 주유소 화장실에 대하여 이용불편 해소 노력 및 용품을 제공하여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【협약내용】** 위 기관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각각의 역할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.

- ① "서울특별시"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주유소 화장실 지원사업의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- ② "(사)한국주유소협회"는 주유소 화장실 개방을 적극 홍보 및 계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 또한 화장실 이용물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입하여 각 주유소별로 지급 후 사업결과를 분기별로 서울시에 제출한다.
- ③ "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"은 법인택시회사(255개) 화장실을 적극 개방하고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장실 이용 교육 및 화장실 이용 청결캠페인을 실시토록 한다.
- ④ "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"은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장실 이용 홍보 및 화장실 이용 청결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유소 화장실 지원상황을 점검하도록 한다.
- ⑤ "제이씨데코 코리아(주)"는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협약에 명시된 공공기여금을 주유소 화장실용품 지원사업에 제공하되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의 사용용도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.

**제3조 【실무회의】**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내용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뢰의 원칙 아래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존중하며, 실무협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실무회의를 실시한다.

**제4조 【협약서의 유효기간】** 본 협약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 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5조 【협약의 해지】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, (사)한국주유소협회,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,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, 제이씨데코 코리아(주)는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① 일방 당사자가 이 협약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② 본 협약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

**제6조 【기타】**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가 상호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
2017년 8월 31일

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 
대신하여 도시교통본부장 고 홍 석  (인)

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장 김 문 식  (인)

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문 충 석 

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 연 수 

제이씨데코 코리아(주) 대표이사 김 주 용  (인)